

검토의견서

【행정지원과】

제명 :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공포안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3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정함(안 제3조)
- 나.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함(안 제4조)
- 다.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 일 또는 중증장애 등록을 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라.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의회사무국장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, 관련법령에 따라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
3. 검토의견

중증장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으로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안과 같이 공포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(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)
 - ① (생략)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,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.
 - ④~⑨ (생략)